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2. 6 선고 2016가단1157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7. 1. 11

판결선 고 2017. 2. 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남양주시 C 답 37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⑤, ⑥, ⑦,⑧, ⑨,⑩,⑪, ⑫,⑬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⑩부분 114.17㎡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,
나. 위 선내 0부분 114.17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1991. 12. 30. 남양주시 C 답 37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그런데 피고 소유의 단층 근린생활시설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⑬부분 114.17㎡를 침범한 채로 축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내(3부분 114.17㎡)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, 위 선내 ㉔부분 114.17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완수

별지